##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65 발의연월일: 2025. 1. 23.

발 의 자:김정호·신영대·전진숙

박 정 • 윤후덕 • 김동아

이연희 · 허종식 · 정성호

박희승 • 유호중 의위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주민등록증 위조 및 변조 시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등의 위조·변조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도입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해서는 공문서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논쟁이 있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위조 또는 변조 및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화면정보를 조작하여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 우에 이를 처벌할 근거가 마땅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현행법 벌칙 규정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변조 또는 화면정보를 조작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올바른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8호의3 신설).

법률 제 호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에 제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3.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위조·변조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화면정보를 조작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바일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8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화면정보를 조작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제37조(벌칙) 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8의2. (생 략)	1. ~ 8의2.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8의3.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위
	조ㆍ변조 또는 모바일 주민등
	록증의 화면정보를 조작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자
9. • 10. (생 략)	9. •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